

본 조건("조건")은 구매자 구매 오더에 따라 구매자에게 판매 또는 공급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공급자"는 오더에 표시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새 조건을 제공할 때까지 본 조건이 구매자의 모든 구매에 적용된다는 데에 합의한다. 공급자는 해당 법률상 및 오더상의 모든 요건이 자신의 공급업체에 전달되게 해야 하고 그들의 공급업체들도 제조업체에 대해 것처럼 하도록 해야 한다.

본 오더에 들어 있는 조건은 구매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추가, 수정, 대체, 기타 변경될 수 없고, 구매자가 수령하는 각 선적물품은 승인서, 인수서, 인보이스, 기타 공급자양식상의 조건, 구매자의 선적인수나 그에 대한 지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와 상관없이 본 조건에만 의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1. 문서.** 아래 문서는 인용을 통해 본 조건에 혼입되어 본 조건의 구속력 있는 일부가 되며, 이들은 [donaldson.com/en-us/about-us/suppliers](http://donaldson.com/en-us/about-us/supplier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A. 공급자 품질매뉴얼
  - B. 운송 및 전세계 교역 준수편람
  - C. 부품과 공정 변경절차 및 양식
  - D. 공급자 행위규범
- 2. 인수.** 공급자는 오더 수령일자 후 일(1)일 이내에, 되도록이면 Oracle iSupplier® 포털이나 상호 합의한 다른 방법을 통해, a) 전량 수락/거절 또는 b) 변경요청을 해야 한다. 공급자가 오더상 수량과 다른 수량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Donaldson 구매자의 서면승인이나 Oracle iSupplier® 포털을 통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공급자가 오더 수령 후 오(5)일 이내에 전량 수락/거절이나 변경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오더는 전량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가 이를 수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자가 구두, 서면, 또는 전자식으로 그 오더의 수령을 확인하거나 이행을 개시하면 공급자가 그 오더를(본 조건을 포함해서) 수락한 것이 된다. 공급자 수령확인서, 인보이스, 입찰서, 제안서, 기타 문서상의 추가 또는 상충조건은 구매자가 서면으로 그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구매자가 제공한 포장, 사양, 업무명세서, 표준, 기타 요건의 엄격한 준수 하에 구매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 3. 필요자료.**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모든 인보이스, 선하증권, 포장전표 및 포장에는 아래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자 명칭, 구매자 구입처/선적물품도착지 주소, 인보이스번호와 일자, 구매 오더 번호, 구매 오더 라인번호, 부품번호와 내역, 선적수량, 단가, 총액, 원산지국가, 상품분류(HS)코드(첫 6자리), 통화, 지불주소, 해당 할인 및 세금.
- 4. 가격 및 지불.** 상품과 서비스는 당사자들 간 서면약정에 따라 오더에 기재된 가격에 구매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자는 선적이나 이행 당시 유효한 인하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모든 가격변경통지는 효력발생일 최소 6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가격인상요청은 노임, 자재, 경상비, 가공 및 운송비를 포함한 원가요소의 공개산정 등 명확한 설명을 통해 정당화 되어야 한다. 내륙운송, 박스포장이나 나무포장용 추가요금은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지불조건은 해당 오더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날짜는 오더에 달리 기재되지 않은 한 구매자 시설에서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 수량과 구매자의 인보이스수량 중 나중에 도래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지불조건이 해당 오더에 기재되지 않았으면 현지법령상 지불조건이 허용하는 한 60일 외상이다. 지불은 오더에 기재된 통화로 해야 한다.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한,
  - 구매자 지불금액은 공급자과실, 하자, 또는 오더(본 조건 포함)불이행을 이유로 조정될 수 있다.
  - 인보이스금액이 오더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자동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을 지불한다.
  - 구매자는 공급자나 공급자계열사가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언제든 상계할 수 있다.

불완전한 인보이스는 공급자에게 반송될 수 있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급자는 지불조건으로 자신과 자신의 공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담보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담합 기타 경쟁방해활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장한다.

구매자가 선급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금액의 정확한 용도를 보장하는 취소불가 보증신용장이나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증서의 경우 구매자가 사전에 보증조건과 이용할 보증회사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한다.

5. **인보이스.** 공급자는 현지법령이 우편을 통한 인보이스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오더에 기재된 구매자자료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인보이스를 제출할 수 있다. 구매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인도 후 120일보다 늦게 제출된 인보이스에 대한 지불책임이 없다. 인보이스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상품선적일자나 서비스완료일자 전에 발송될 수 없다. 구매자로의 수입선적에 수반되는 국제상업 인보이스에는 각 라인품목별 세관명세, 통관가격, 원산지국가, 상품분류(HS)코드, 공급자주소 및 수출관리등급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어야 한다.
6. **포장슬립.** 품목별 포장슬립이 각 선적에 첨부되어야 한다. 포장슬립이 첨부되지 않은 모든 선적에는 구매자의 계산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7. **해지.** 구매자는 어떤 사유로든 공급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오더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상품이 공급자에 의해 제조되거나 선적된 후에 구매자가 오더를 해지한 경우, 구매자는 해지 전 및 해지를 직접원인으로 해서 공급자가 지출한 통상적이고 적절한 직접 및 확인가능 경비를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는, 구매자의 다른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오더 이행에 필요한 통상의 합리적 소요기간 전에 공급자가 지출한 요금이나 경비, 또는 구매자의 해지통지 후에 지출하거나 발생한 모든 경비, 요금, 또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8. **보장 및 구제조치.** 해당법령 및/또는 본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묵시적이나 명시적인 모든 보장에 추가해서 공급자는 아래 사항을 보장한다. (a)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담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구매자요구조건 및 오더를 충족한다는 것, (b) 모든 상품이 디자인(구매자가 한 디자인은 제외), 가공, 자재 및 제조상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것, (c) 모든 상품의 생산이나 가공, 또는 서비스이행이 해당 상품, 서비스, 공급자 및 그 업무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며, 본 조건이나 해당 오더에 인용된 각종 요구조건과 문서에 따른 건전한 여건, 건강 및 안전상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공급자는 또한 (x) 자신이 모든 오더(본 조건 포함)상의 의무를 이행할 전문성 및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 (y)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3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및 (z) 자신이 제3자에 대해 본 조건상의 의무와 상충하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상품의 품질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 판매자와 그 사용자 및 직원이 하는 모든 진술, 발언 또는 보장(구두, 서면, 또는 판매자 소개서, 카탈로그 및 광고 등에 의한 것)은 계약의 명시적 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용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에 추가해서, 구매자는 공급자가 한 보장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반려할 수 있고, (a) 대체재를 획득하고 그 대체재와 관련된 모든 추가비용을 상계하거나 공급자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b) 자신의 옵션에 따라 부담 없이 해당상품을 교체해 주거나 해당서비스를 재-이행하거나, 그 상품이나 서비스대금을 배상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자영내, 공급자영내, 또는 오더대상 공급자하도급업체 영내에서 해당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되 그러한 의무는 없다. 구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수, 검사, 또는 대금지불은 공급자의 보장 기타 의무에 대한 권리포기가 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해당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한 구매자고객의 불만을 조사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는 데에 있어 최선을 다해 구매자를 지원해야 한다. 공급자가 해당구매자 외의 다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기성제품이나 수정되지 않은 카탈로그상품을 제외하고, 구매자의 부당한 반려, 인수취소, 미지불이나 지불거절의 경우에도 공급자는 그 오더 대상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다. 본 항 상의 당사자들의 의도는 구매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의 상품 재판매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9. **사양 및 검사.** 본 오더에 따라 공급되는 품목은 구매자가 승인한 샘플과 동일해야 하고 본 오더상 정해진 도면 및 사양에 일치해야 한다. 구매자는 제조 전후 및 그 도중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자재와 작업품질을 검사 및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한 검사와 테스트는 모든 품목을 본 오더를 엄격히 준수해서 공급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 본 오더를 충족하지 못한 품목을 구매자가 반려한 경우, 구매자는 법률이나 조리상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에 추가해서 공급자에게 그에 대한 신용을 요구하거나 공급자 경비부담으로 그 교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반려제품의 선적은 공급자 위험부담으로 해야 한다. 수령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대금지불이 구매자가 위 조항에 따른 제품검사 및 반려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될 수 없다.
10. **감사권.** 구매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대리인을 파견해서 오더상 공급자업무 및 오더에 따라 공급자가 요청하는 지불과 관련해서 공급자가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문서와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공급자는 오더와 관련된 모든 장부와 기록을 그 오더상의 서비스제공 및 공급물품 인도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1. **변경.** 구매자는 공급자가 이행할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시로 변경하고 “변경명령”을 통해 그 변경(들)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변경이 가격이나 공급될 품목의 수량 또는 이행기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구매자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공급자는 그러한 조정에 대한 클레임을 선적 전 및 그 변경 후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자가 그 조정에 대한 클레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된다.

공급자는 자신의 제조공정이나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부품 또는 원자재를 변경하기 전에 [donaldson.com/en-us/about-us/suppliers](http://donaldson.com/en-us/about-us/suppliers) 에 있는 부품, 공정 및/또는 제조장소 변경요청서 양식을 이용해서 이를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품과 공정의 모든 변경요청은 공식으로 및 배타적으로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급자의 통지를 받은 구매자는 그 변경요청을 검토해서 샘플제출이나 테스트 등 특정 요구조건을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경을 하기 전에 공급자는 구매자의 공식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는 승인 없는 변경으로 인한 품질문제관련 모든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2. **인도.** 오더상 달리 기재된 것이 없는 한 (a) 공급자가 상품선적의 책임을 지면 공급자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를 통해 한번에 상품을 선적해야 하고, (b) 모든 상품은 구매자가 동의한 운송 및 세계교역이행편람에 기재된 Incoterms를 이용해서 선적되어야 한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합의한 인도 및 이행일정과 오더에 따라 인도되거나 이행되어야 한다. 대체물품은 수락될 수 없다. 상품은 정해진 날짜까지 선적이 완료되어야 하되 구매자의 사전동의 없이 1주 이상 먼저 선적되어서는 안 된다. 지연이 있으면 공급자는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인도일자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초과운송요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구매자에게 배상해야 하되, 그 불이행이 구매자 책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매자는 오더를 충족하지 못한 모든 선적을 반려할 수 있다. 공급자가 불가항력 등 어떤 사유로든 선적을 지연한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통지로 본 오더를 취소할 수 있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구매자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인도 및/또는 이행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인도 및/또는 이행의 지연이나 합의한 조건에 따르지 않은 인도 및/또는 이행이 공급자 위반행위가 되어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구매자대상 손해배상책임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상품의 손실이나 손상의 위험은 오더상 Incoterm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매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그 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13. **불가항력.** 당사자가 천재지변, 전쟁이나 테러행위, 공급물품부족, 고장, 기타 그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범위 밖의 사건으로 인해 본 조건에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그 사유에 따른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없다.

14. **구매자공급 자재와 장비.** 구매자는 각종 원자재, 부품, 데이터베이스, 또는 문서 등 자신이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재(“구매자자재”) 및 자신이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보상하는 각종 공구 기타 장비(“구매자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자재와 구매자장비의 소유권확인을 위해 공급자서명 없이 재무제표 기타 문서를 제출할 권한을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자재나 구매자장비를 매각, 담보제공, 양도하거나 공급자시설로부터 반출할 수 없다. 공급자는 각종 구매자자재나 구매자장비를 오더상 자신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이용해야 하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공급자는 구매자장비에 변경을 가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구매자자재와 구매자장비의 보안 및 기밀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매자자재와 구매자장비의 모든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고,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손상되거나 분실된 품목을 그와 동일한 것으로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급자는 모든 구매자장비와 사용되지 않은 구매자자재를 합당한 마모 외에는 그 원래의 상태로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급자는 모든 구매자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구매자장비 사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에 대해 구매자를 방어하고 그에게 배상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구매자자재 손실오차를 설정한 경우, 공급자는 자신에 대한 구매자 인도비용에 따라 구매자에게 그 초과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공급자는 해당상품에 혼입되어야 하는 구매자자재를 검사해서 요구조건에 불합치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정 오더를 목적으로 공급자가 공구(패턴, 다이, 금형, 지그, 공작물 등 포함)를 제조하거나 획득한 경우, 그 소유권은 그것을 제작하거나 획득하는 때에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요구가 있으면 판매자는 그 공구를 구매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구매자소유의 공구(패턴, 다이, 금형, 지그, 공작물 등 포함)로서 상품제조나 서비스이행에 이용되는 것에는 자산번호와 구매자 소유권을 표시한 인식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15. **재작업 및 구매자영내에서의 작업.** 공급자의 사양 미-충족 및/또는 기타 공급자 과실로 인해 재작업이나 분류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재량에 따라 인도된 상품을 재작업 하거나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추가지출경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급자가 해당 오더에 따라 구매자영내에서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해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급자는 그 영내에서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사람이나 재산상의 상해, 손실,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클레임, 요구, 조치 및 법적 소송에 대해 구매자에게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16. **공급자의 손해배상 포기.** 구매자는 그 손해에 대한 법률상이나 조리상의 평등한 이론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상품, 서비스, 오더, 또는 그 해지와 관련된 특별, 간접, 또는 파생적 손해(이익상실 등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법률 및 제품내용 준수.** 공급자는 오더상 제공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오더에 따른 상품의 제조와 판매 및 해당조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인가, 동의, 승인, 기타 규정상 허가를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획득하고 이행해야 한다. 공급자는 트러스트금지 및 거래관행법, 부패방지 및 뇌물금지법, 노동법과 환경-법 등, 자신의 업무나 주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수출입관리법률 및/또는 거래용 상품의 제조와 생산에 적용되는 연방, 주, 및 현지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데이터시트("SDS")를 요하는 상품은 그 선적 전에 공급자가 현행 SDS를 빠짐없이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급자는 각 상품이 해당 전세계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했거나 이를 면제받았음을 보장한다. 공급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해당상품의 규정상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품과 상품포장은 제품내용공개를 제한, 규정, 또는 요구하는 전세계관련법률("물질-법")을 준수해야 한다. 물질-법에는 아래의 것 등이 포함된다. 고도의 중요성을 가진 물질(SVHC)에 관한 "RoHS" 및 "REACH"라고 알려진 유럽연합지침, 전자 및 전기장비 폐기물(WEEE), 스톡홀름협약, 대한민국 REACH, 중국 RoHS, EU 폐기물기본명령 (WFD), EU 분류, 라벨처리 및 포장방법(CLP), EU End-of-Life 차량(ELV), EU 식품접촉물질(FCM), 독성물질관리법 (TSCA), 캘리포니아 안전식수 및 독극물 시행령 1986(캘리포니아 법안 65), 전세계자동차용 신고물질목록 (GADSL),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신고물질목록 (AD-DSL)과 미국 Lacey법. EU REACH SVHC는 그 SVHC를 포함시키기 전에 이를 신속히 이메일로 substancesofconcern@donaldson.com의 구매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상품이나 상품포장에 포함될 수 없다.

해당상품에 관련법령이 정의하는 이해충돌광물이 포함된 경우, 공급자는 (a) 그 이해충돌광물이 해당법령이 정의하는 "이해충돌해소" 상태임을 보장하고 (b) 요청이 있으면 관련 공급체인상의 이해충돌광물 제련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며, (c) 요청이 있으면 해당상품에 사용된 이해충돌광물의 이해충돌해소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d) 구매자의 이해충돌광물정책에 합치하는 관리시스템을 채택하며, (e) 자신의 공급업체에 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공급자는 국경간 상품이동, 수출입면허, 보고, 평가, 분류, 원산지판단 및 표시, 기타 요건의 준수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구매자의 특정 판매장소 준수의무조건 준수에 있어, 공급자는 구매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문서 및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공급자는 본 오더에 따른 자신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에 관한 모든 세무법령을 준수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본 오더 이행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고, 형사상 범죄인 당사자의 세금회피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18. **정부 도급업체.** 공급자는 구매자가 정부도급업체로서 공급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평등기회 및 긍정적 조치에 관한 각종 법률, 시행령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그 적용한도 내에서 보호대상 퇴역군인 이거나 장애인인 상태를 근거로 한 유자격개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적체성, 또는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 등 그 규정이 설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규정은 통상 그 대상인 원청자와 하도급자로 하여금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적체성, 국적, 보호대상 퇴역군인이나 장애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9. **지적재산권 및 특허.** 계약과 관련해서 구매자가 제공하는 도면, 사양, 지시서, 샘플, 공구, 디자인, 기타 데이터(구두, 서면 기타의 것) 등 모든 자료("노하우")는 구매자의 재산이며 공급자는 본 오더 이행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오더의 수행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발명,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구매자의 재산이 된다. 공급자는 그 재산을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행위를 하거나 문서를 작성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공급자는 오더상 공급되는 품목들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이 제3자의 특허,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공급자는 본 오더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기타 품목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으로서 (a) 특허,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b) 기타 공표된 제3자 지적재산권의 침해, 또는 (c) 미국 및/또는 현지 수출규정에 반하는 관리대상기술의 공개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지출하거나 요구 당하거나,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모든 손실, 비용, 변호인이나 전문가 요금을 포함한 경비, 손해, 클레임, 요구, 또는 채무와, 공급자가 그 방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소송, 클레임, 또는 쟁송절차 방어를 위해 구매자가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구매자, 그 자회사, 계열사, 이사, 임원, 직원, 주주, 또는 고객을 방어 및 보호하고 그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 **공표.** 공급자는 구매자가 그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은 구매자의 특허,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저작권 기타 유형이나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오더 및/또는 상품 및/또는 본 오더에 따라 공급자가 이행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공표(보도자료, 기사, 소개자료, 광고, 홍보물 및 연설 등 포함)도 해서는 안 된다.
21. **비밀유지.** “구매자 비밀자료”는 구매자가 비밀이라고 지정하든 않든 (a) 제품개발, 디자인, 도면, 공식, 조합, 연구개발, 또는 사양, (b) 제품제조기법, 비율 또는 수량, (c) 상품생산장비, (d) 구매자의 고객정보와 구매자고객의 비밀자료, (e) 마케팅, 판매, 고객 및 비공개 재무데이터 등, 해당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구매자사업의 기타 성격, (f) 구매자가 발주한 오더 및 (g)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관한 모든 정보와 유형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급자는 (a) 구매자비밀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구매자비밀자료를 오더에 따른 공급자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근로자, 직원 및 승인 받은 하도급업체도 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급자는 구매자비밀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구매자비밀자료에는 (a) 일반인이 간행물에서 구할 수 있는 것, (b) 구매자로부터 수령하기 전에 공급자가 알고 있었던 것이 공급자의 서면기록에서 입증되는 것, (c) 계약위반이나 법률위반 없이 공급자가 다른 출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상 또는 행정상 절차에 의해 구매자비밀자료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신속히 구매자에게 통지해서 구매자가 그 처분에 이익을 제기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한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도록 소구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22. **손해배상 및 보험.** 공급자는 (a) 그 불이행으로 인해 구매자가 취하는 리콜 기타 적절한 조치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한 자신의 오더(본 조건 포함)상 의무 불이행, (b) 해당상품과 관련된 공급자현장에서의 취급, 포장, 라벨작업, 보관, 처치, 반출, 운송 및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장래법률을 포함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채무, 손실, 손해, 담보, 판결, 책임, 벌금, 경비, 위약금 및 변호인요금과 소송경비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매자와 그 계열사, 자회사, 그들의 승계인, 양수인, 이사, 임원, 근로자 및 직원에게 배상하고, 그들을 방어하며, 그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급자의 손해배상의무는 구매자의 중과실이나 고의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손해배상은 구매자의 다른 구제수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급자는 항상 위 모든 위험에서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재산손해, 기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그 가입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3. **분쟁해결.** 본 오더의 이행에서 발행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협상을 통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본 오더와 그 의미 및 이와 관련해서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해당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이행된 관할지역(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복수의 관할지역에 인도되거나 이행된 경우, 구매자가 포함된 관할지역)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되, 법의 충돌의 원칙은 그 적용을 배제한다. 그 관할지역 내 법원이 그 분쟁을 배타적으로 심판한다. 국가간 상품판매를 위한 계약에 대한 유엔협약은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그러나 그 클레임이나 분쟁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네소타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되 법의 충돌의 원칙은 그 적용을 배제하고, 미네소타 주 Hennepin 카운티 관할 연방 또는 주 법원에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미네소타 법원의 인적 관할에 복속한다. 모든 협상은 영어로 진행되어야 하고 해당 오더를 포함한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4. **임치.** 부품이나 부속품, 기타 제품의 조립, 결합, 제조, 생산, 조립, 수리, 구매, 포장, 보관, 라벨작업, 마감, 디자인, 개발, 기획, 가공, 사용 및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만을 위해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장비, 부속품, 문서, 또는 공구를 제공했거나 적어도 그 일부를 보상한 경우(“임치재산”), 그 임치재산은 항상 구매자 재산이며 의도적 임치 기준으로만 공급자가 이를 보유한다. 구매자만 임치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을 가지며, 공급자는 오더상 자신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그 임치재산을 사용할 제한적 권리를 갖는다. 공급자는 임치재산을 공급자재산이나 구매자나 공급자 외의 자의 재산과 혼합해서는 안 되고, 임치재산에 구매자소유권을 표시해야 하며,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치재산을 공급자영내에서 반출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는 언제나 어떤 사유로든 공급자에 대한 지불이나 통지, 또는 법원에서의 변론이나 법원명령의 필요 없이 모든 임치재산을 재 점유할 수 있고, 공급자는 위의 권리를 포기한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급자는 임치재산을 즉시 구매자에게 출고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공급자는 임치재산에 담보가 설정되게 해서는 안 되고, 공급자는 본 조를 통해 자신이 임치재산에 갖거나 갖게 되는 모든 담보를 포기하며, 공급자는 본 조를 통해 임치재산상의 담보에 대해 구매자를 면책한다. 공급자는 자신만의 경비부담으로 임치재산의 임대, 점유, 임차, 사용, 상태, 유지보수, 작동, 운송, 반환, 또는 본 계약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손실, 손해, 채무, 벌금, 조치, 쟁송절차, 이권부여, 요구, 화해상 지불금액이나 변호인요금과 법원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한 소송 및 판결에 대해 구매자, 그 자회사, 계열사, 이사, 임원, 근로자, 대리인, 직원,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배상하고, 이들을 방어하며, 이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임치재산의 적합성, 상태, 상품성, 디자인 또는 작동이나 특정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도 한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한다. 위와는 상관없이, 그 임치관계가 보증된 금융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임치재산에 대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나 이권에 대한 지속적 담보권을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공급자는 언제나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상대로 파산법상의 파산신청이 된 경우 구매자가 파산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유예에서 완전히 면제되어 공급자시설에서 임치재산을 반출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을 파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는 데에 동의한다. 구매자가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구매자는 변론이나 임치재산의 가액, 임치재산상 구매자 이권보호장치 결여, 또는 임치재산상 공급자지분 없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자동유예에서 면제될 수 있다. 공급자는 자동유예 면제가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과 자신이 자동유예의 면제를 얻으려는 구매자의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를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25. **분리적용.** 본 조건의 어느 규정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해 불법이나 집행력상실로 판단된 경우, 그 규정은 그 한도까지 본 조건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본 조건 나머지의 집행력은 그 규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26. **일반조건.** 본 조건상 법률의 지칭에는 연방, 주, 군, 지역, 지방 및 현지의 법률, 법규, 규정, 규칙, 명령, 및 정부지침이 포함된다. 각 오더(본 조건 포함)는 당사자들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로서 그 오더 대상사안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모든 약정이나 합의를 대체하되, (a) RFP나 업무협약상의 공급자 추가의무는 그 예외이며, (b) 오더가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비밀유지 또는 지적 재산 약정을 종료되게 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안전, 법률준수, 보증, 보험,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에 관한 것 등 본 모든 조건은 오더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그 대상당사자 보호에 필요한 한 그 후에도 집행력을 온전히 유지한다. 오더상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은 누적적인 것으로서 법률이나 조리상 제공되는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에 추가된다. 공급자는 오더 또는 오더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본 조건이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오더는 당사자들이 위임한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